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0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종배·이종욱·김성원

서천호 · 성일종 · 김위상

엄태영 • 진종오 • 김재섭

김예지 • 박덕흠 • 송석준

정희용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 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 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6조의5(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공단 또는 심사 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 간이 끝나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 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으로서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의5(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공단 또
	는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
	급여, 진료기록 및 심사 자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
	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
	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
	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해
	당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나
	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
	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

보를 유예할 수 있다.

-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 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 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 가 명백한 경우
-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수 사기관 등이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 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 의 유예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 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 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 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 ①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 사평가원이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으 수사기관 등이 부담한다.
| 제119조(과태료) ①・②(생 략) | 제119조(과태료) ①・②(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 직원으로서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⑤(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